

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분	대상	지급액
특별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총수(회장) • 국영기업체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 시간보상수당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 시간보상수당 12만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일 반 강 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13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8만원 • 초과 매시간 5만원 •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7만원 • 초과 매시간 4만원 •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5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 시간보상수당 3만원

-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 ※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 시간보상수당은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 ※ 퍼실리테이터(FT) 강사수당은 최초 2시간까지는 일반강사 조건으로 지급하고, 3시간 이후부터는 초과 매시간 단가의 80%를 적용하여 지급

나.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지급 요건	지 급 액	한도 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다.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단,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라.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한도 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전북 지역 외래강사	•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전북 지역 외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륜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바.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6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 만 지급 ◆ 2시간 이상 100% 지급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